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동호회 운영 내규

제정 2023. 11. 24. 규정 제3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장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 상호 간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 활발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공단 직원들이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활동을 하고자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2. "주관 부서"란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등록된 동호회에 적용한다.

제2장 동호회 등록

제4조(가입대상) 동호회 가입대상은 재직직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2. 공무직
3. 기간제근로자 단, 기간제근로자는 공단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자동 탈퇴한 것으로 한다.
4. 각 동호회에 회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회비를 동호회 회비관리통장에 정기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동호회 등록신청) ① 동호회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동호회 등록신청서
2. 동호회 회칙
3.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
4. 활동계획서
5. 동호회 회비 관리통장 사본

② 주관 부서는 등록 여부를 등록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회 등록기준) ① 동호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는 공단 직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정 직급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등록신청을 제한한다.

1. 정치, 사상 및 이념 등의 성격을 갖는 동호회
2. 학연, 지연, 특정 대상자만을 회원으로 하는 동호회
3. 구체적 활동 내용이 부재한 단순 친목 도모의 성격을 갖는 동호회
4. 기타 사회 통념상 동호회로 인정할 수 없는 동호회

제3장 동호회 해체

제7조(동호회 해체) ① 동호회 해체에 관한 사항은 각 동호회별 회칙에 따른다.

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체 후 7일 이내에 주관 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6개월 이상 운영한 동호회가 해체한 경우, 활동 경비는 정산하지 아니하며, 단, 6개월 미만일 경우 월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4장 동호회 활동 경비 지원

제8조(활동 경비 지원)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호회에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차량임차료
2. 단체복 구입
3. 행사비용(시상품, 다과비, 홍보물 제작비)
4. 간담회에 필요한 식비
5. 그 밖에 이사장이 동호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지원기준 및 사용 등) ① 제8조에 따른 활동 경비는 기본활동 경비와 평가점수에 따른 활동 경비로 나뉜다.

② 기본활동 경비는 신규 동호회만 해당하며, 평가점수에 따른 활동 경비는 동호회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하며, 평가 및 지원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활동 경비는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③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3월, 12월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동호회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 보고서
2. 동호회 회원명부
3. 최근 3개월 회원의 회비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동호회 통장 입금 내역

④ 동호회에서 행사(대회)를 개최·참가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고 그 범위는 별표2와 같다.

1. 대내 행사(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는 반기 1회에 한하며, 동호회는 행사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외 행사(대회) 참가 시에는 별도의 참가경비를 대회 규모 및 타 동호회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동호회는 행사 후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정산 보고서를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호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동호회 활동에 따른 경비는 각 동호회별 자체 회비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내역 관리) 주관 부서는 동호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 후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동호회의 적용례) 이 내규 시행 전 운영되던 동호회는 이 내규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보며, 이 내규 시행 전의 동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내규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9조 관련)

동호회 평가 및 활동 경비 지원금 지급기준

◆ 평가 기준(항목별 배점)

구 분	배 점		비 고	
	100점	세 부 내 역		
회원 수	30점	가산1점	2명 추가 시마다	회비를 정기납부하는 회원 기준 ※ 동호회 등록기준 5명 이상
		30점	11 ~ 15명	
		20점	6 ~ 10명	
		10점	5명	
활동 실적	25점	25점	9회 이상	연간 활동 실적 확인 1. 활동 보고서 사진으로 확인하고, 정기모임, 임시(번개)모임, 사내 대회 개최 포함 2. 실적 없을 시 0점
		20점	6 ~ 8회	
		15점	5 ~ 3회	
		10점	2회 이하	
대내외적 활동 실적	15점	15점	5회 이상	대외대회 참가, 전시회, 캠페인, 각종 봉사활동 등 확인 1. 활동 보고서 사진으로 확인 2. 실적 없을 시 0점
		10점	3회~4회	
		5점	1회~2회	
경과 연수	15점	15점	3년 이상	연 5회 이상 활동 실적 있는 경우에만 경과 연수 인정
		10점	1년 이상 ~ 3년 미만	
		5점	1년 미만	
회비규모	15점	15점	2만원 이상	동아리 회칙의 회비 기준
		10점	1만원 ~ 2만원 미만	
		5점	1만원 미만	

◆ 신규 동호회 한정 기본활동 경비 지원금

신규 동호회 조건	지원금	비고
창립 1년 미만	120,000원	지원금은 상한액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점수에 따른 활동 지원금 기준

평가점수	지원금	비 고
80점 이상	200,000원	지원금은 상한액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70점 ~ 79점	150,000원	
61점 ~ 69점	100,000원	
60점 이하	미지급	

[별표 2] (제9조 관련)

동호회 행사(대회) 개최·참가 보조금 지원기준

지 원 대 상	지 원 금
동호회 행사(대회) 개최	20만원 이내
자치단체 및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대회)에 참가	15만원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동호회 활동 보고서

동호회 명			
회 장		총 무	
창립일			
동호회 활동 내역			
<p><제 ○○월 정기모임> ○ 일 자 : ○ 장 소 : ○ 참석자 :</p>		사진	

[별지 제6호 서식]

동호회 지원금 관리대장



년

연 번	동호회 명	지원금	지 원 내 역				비 고
			일 자	은행명	입금자명	계좌번호	
계							
1							
2							
3							
4							
5							
6							
7							
8							
9							
10							